

서울주택도시공사

2016년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자 모집 공고

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.

1. 전세임대 주택이란
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수급자)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(예비)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**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**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**서울주택도시공사**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
2. 사업지역 . 공급호수 . 대상주택 . 지원한도액

-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 전 지역
- 공급호수 : **2,000호**

구 분	기존주택 전세임대	신혼부부 전세임대
계	2,000호	300호
우선배정	850호 (자치구별 각 34호)	150호 (자치구별 각 6호)
잔여배정	1,000호 (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접수자비율로 배정)	150호 (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접수자비율로 배정)

- 대상주택 : 신청자치구를 포함한 **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** 가능

종 류	면 적	보증금한도액
단독, 다가구, 연립주택, 아파트 오피스텔 ^{*)} 지원가능 <small>*)오피스텔 :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</small>	국민주택규모 (전용 85m²)이하 ※1인 가구 60m² 이하	2억 1,250만원 이내 <small>※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</small>

※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합니다.

3. 보증금지원 및 임대조건

- 보증금 지원 :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

구 분	보증금지원			
지원기준금액	호당 8,500만원			
실 지원금액	호당 8,500만원의 95%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(최대8,075만원) ※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			
지원이자	지원금규모	3천만원 이하	3천만원초과~5천만원이하	5천만원 초과
	지원 금리	연 1.0%	연 1.5%	연 2%
※ 지원이자는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				
※ 지원이자 산정				
(예시 1) 전세계약 : 임대보증금 8,500만원인 경우 - 지원액 : 8,500만원 × 95% = 8,075만원 - 입주자부담금 : 425만원 - 지원이자 : [지원액 × 2%(연) ÷ 12개월] = [(8,500만원 - 425만원) × 2% ÷ 12] = 134,580원				
(예시 2) 보증부월세계약 : 임대보증금 8,5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- 지원액 : 8,500만원 - (기본보증금 425만원+1년치 월세 120만원) = 7,955만원 * 입주자부담금 : 545만원 - 지원이자 : [지원액 × 2%(연) ÷ 12개월] = [(8,500만원 - 545만원) × 2% ÷ 12] = 132,580원 ※ 단, 보증부월세(40만원 한도)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가능 (월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)				

- 계약방식

- 전세주택 : 보증금한도액 **2억 1,250만원 이내**
- 보증부월세주택 : 기본 보증금 + 월세금액(**40만원 이내**)
※ **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증금과 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 1,250만원 이내 일 때 지원가능**
- 전세전환보증금 = (월세금액 X 12) / 전월세전환율(%)
※ **전월세전환율 : 5%** 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7조의2에 의함)
- 보증금부담 : 입주자부담금액 + 지원신청금액(지원한도액 범위내)

- 임대기간 : 2년

-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(최장 20년 거주)
단,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.

4.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[1, 2순위 동시접수]

- 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 09. 20.)현재 **사업대상지역(각 자치구)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**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

무주택세대구성원

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.

-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(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 전원(공급신청자 포함)
 -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·비속
 -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-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·비속
- * 주택소유여부, 소득자산산정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)를 대상으로 합니다.

신청자격

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.

- ① 세대주
 -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
 -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·비속
- *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1997.09.21이후 출생)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
*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(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)

- 1순위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**생계급여 수급자**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**의료급여 수급자**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**한부모가족**

- 2순위

-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**50%이하*인 자**

※ 다만,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**차량기준가액¹⁾**이 **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(장애인용 자동차 제외)**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

*1)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
2) 소득 산정 및 자동차, 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.
단,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.

- 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)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
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

구 분	3인이하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8인 가구
소득50% 이하	2,408,332	2,696,577	2,737,701	2,902,306	3,067,070	3,231,755
소득100%이하	4,816,665	5,393,154	5,475,403	5,804,772	6,134,141	6,463,510

*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(태아수 포함)

- **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(2016. 09. 20. 기준)**

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**서울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**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¹⁾ ·창업 ²⁾ 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 ※ 취업·창업 1) 취업 :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(www.4insure.or.kr)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확인 가능 2) 창업 :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 소득 신고를 하는 것 세무서를 통해 확인가능	가. 24개월 이상 나.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. 12개월 미만	3점 2점 1점
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	가. 5년 이상 나. 3년 이상 5년 미만 다. 3년 미만	3점 2점 1점
③ *부양가족의 수 (태아를 포함하며,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) ※ 신청인 제외 * 별도가점 ※ 미성년 : 만 19세 미만 (1997.09.21 이후 출생) ※ 중증장애인 - 장애등급 2급 이상 / 상이등급 3급 이상 -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, 시각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심장, 호흡기, 간질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	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	3점 2점 1점
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	가. 24회 이상 납입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	3점 2점 1점
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.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. 하나만 구비한 주택)	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.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. 하나만 구비한 주택	2점 1점

*** 부양가족의 범위**

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. 단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

-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
 -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.비속
 -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.자매
 -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.비속
 -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.자매
 -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주(체류지)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
- *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(공급신청자 포함)의 태아를 말함
 * 단, 형제.자매는 「민법」상 미성년자(1997.09.21이후 출생) 또는 만60세(1956.09.20이전 출생) 이상인 자에 한하며,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.자매의 태아는 제외

5.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[1, 2, 3, 4순위 접수]

- 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 09. 20.)현재 **사업대상지역(각 자치구)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*무주택세대구성원**으로서 혼인 5년(재혼포함) 이내 신혼부부(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)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

순 위	신청자격 요건
1순위	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09.20) 현재 혼인 3년 이내(2013.09.21 ~ 2016.09.20 사이에 혼인신고)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 인 자
2순위	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09.20) 현재 혼인 5년 이내(2011.09.21 ~ 2016.09.20 사이에 혼인신고) 이고,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 인 자
3순위	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09.20) 현재 혼인 5년 이내(2011.09.21. ~ 2016.09.20 사이에 혼인신고)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 인 자 또는 '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*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 인 자
4순위	입주자모집 공고일(2016.09.20) 현재 혼인 5년 이내(2011.09.21 ~ 2016.09.20 사이에 혼인신고)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 인 자 또는 '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*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 인 자

*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 만을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하며 신청접수처는 예비신혼부부 일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함
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

구 분	3인이하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8인 가구
소득50% 이하	2,408,332	2,696,577	2,737,701	2,902,306	3,067,070	3,231,755
소득70% 이하	3,371,665	3,775,207	3,832,782	4,063,340	4,293,890	4,524,457

*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(태아수 포함)

- ※ (혼인) 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을 포함
- ※ (임신)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
- ※ (출산) 출생신고일 기준, 입양(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)의 경우 입양신고일. 다만,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,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○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(2016. 09. 20. 기준)

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

※ 배점항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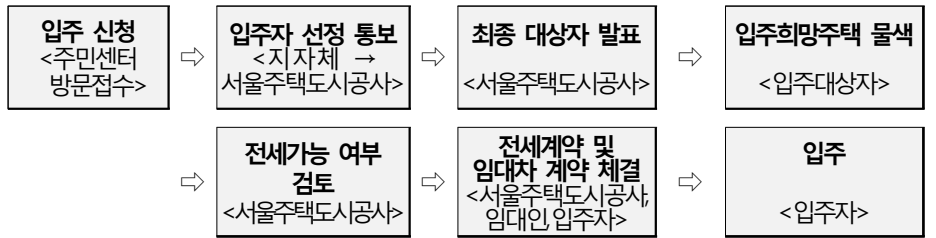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① 자녀의 수 (민법상 미성년[1997.09.21이후 출생]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,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)	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	3점 2점 1점
② 신청인의 나이(만)	가. 30세 미만 나.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. 35세 이상	3점 2점 1점
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	가. 24회 이상 납입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	3점 2점 1점
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·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(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) *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	가. 24개월 이상 나.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.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3점 2점 1점
⑤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	가. 3년 이상 나. 1년 이상 3년 미만 다. 1년 미만	3점 2점 1점
⑥ 장애인 등록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 (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)	2점
⑦ 만 65세(1951.09.20이전 출생)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 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 ※ 예비신혼부부는 배점제외 항목	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(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)	1점

*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개별 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) 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)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
 1) 차량기준가액 :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
 2) 비영업용 자동차 :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

6. 신청기간 및 장소

- 신청기간 : **2016. 09. 26. (월) ~ 2016. 09. 30. (금) 10시 ~ 17시**
 ※ **기존주택, 신혼부부 동시 접수**
- 신청장소 :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16.09.20)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**거주지의 주민센터(동사무소)**

7. 공급절차



8. 입주자격 확인방법

-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의 "사회보장정보시스템"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할 예정임
- "사회보장정보시스템"을 이용한 자격 확인 : 무주택 여부, 기초생활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소득 50% 이하 가구(토지·자동차 검색 포함), 소득 100%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, 소득 70% 이하 신혼부부 해당여부
- 소득 조회 항목

소득유형	세부항목
근로소득	①상시근로소득, ②일용근로소득, ③자활근로소득, ④공공일자리소득
사업소득	⑤농업소득, ⑥임업소득, ⑦어업소득, ⑧기타사업소득
재산소득	⑨임대소득, ⑩이자소득, ⑪연금소득
기타소득	⑫공적이전소득

9. 신청시 구비서류

※ **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("16.09.20.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
구분	구비사항	비 고
공통 준비 사항	①공급신청서	· 접수 장소에 비치
	②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
	③주민등록등본 1부	·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(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,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※ 유의사항: 주민등록표 발급시 '주민등록번호', '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', '세대주관계'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(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)
	④신분증 · 도장	· 배우자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) 제출 ·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
	⑤납입인정회차증명서	·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※ 발급기준일 : 2016.09.20. (발급관리번호 : 2016980079) ※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(http://www.ap2you.com)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
	⑥기타서류	·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· 취업 :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·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· 국민연금관리공단, 국민보험건강공단,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가능 · 창업 :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·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
신혼 부부	①혼인관계증명서	· 혼인신고일 확인
	해당 시 제출	- 자녀의 기본증명서 :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입양 시 추가 - 임신진단서 등 :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(병원 직인 날인)

10. 입주대상자 발표

-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상자 발표(예정)일 : 2016. 11. 04. (금) 18:00
 - ※ 입주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 - ※ 입주대상자가(당첨 및 예비당첨자) 공급을 포기할 경우 각 자치구별 후순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.

11. 기타 유의사항

-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)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.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까지 입주자격(소득, 자산 및 세대구성 등)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기금(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)」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 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예비 신혼부부는 공동신청자인 예비배우자와 혼인 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당시 예비배우자 이외의 자와 혼인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.
- 현재 전세임대주택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.
-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(계약기간 별도안내)
-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 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.
- 입주대상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, 불법,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 합니다.
- 주택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고, 잔금은 입주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며,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.
- 전세임대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(세입자 분)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. 단,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(세입자)가 부담합니다.
- 접수관련 사항은 소재지 주민센터(동사무소)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을 준용합니다.

12. 문의처

-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
 -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,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
-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
 -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(☎ 1600-3456)
- 홈페이지 <http://www.i-sh.co.kr>

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
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

2016. 09. 20.

 서울주택도시공사